

구분	신청일자		신청방법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2025.03.31.(월)	09:00 ~ 17:30	▪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(청약 Home)

■ 특별공급 청약자격 안내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(㉠~㉣)을 모두 갖춘 분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②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 1순위자(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)③ "입주자모집공고 <표2>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"을 충족한 분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(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)이 "입주자모집공고 <표4>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(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)의 120%(단,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%) 이하인 분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(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예시1: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(친모),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, 세대 분리 된 부(父)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- 예시2: 노부모, 본인(세대주이자 신청자),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,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,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당첨자 선정 순서: 우선공급(90%) - ㉠지역 → ㉡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기준(순위순차)으로 당첨자를 선정. 추첨공급(10%) - ㉠지역 → ㉢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.• ㉠소득구분 <table><thead><tr><th>단계</th><th>소득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단계</td><td>우선공급(90%)</td><td>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하)</td></tr><tr><td>2단계</td><td>추첨공급(10%)</td><td>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% 이하) 및 1단계 공급 낙첨자</td></tr></tbody>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㉡지역: 해당지역 거주자(부산광역시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)• ㉢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<table><thead><tr><th colspan="2">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가.</td><td>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)이 많은 분</td></tr><tr><td>나.</td><td>저축총액이 많은 분</td></tr></tbody></table>	단계	소득구분	내용	1단계	우선공급(90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하)	2단계	추첨공급(10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% 이하) 및 1단계 공급 낙첨자	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		가.	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)이 많은 분	나.	저축총액이 많은 분																						
단계	소득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단계	우선공급(90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단계	추첨공급(10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% 이하) 및 1단계 공급 낙첨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	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)이 많은 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	저축총액이 많은 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<table><thead><tr><th colspan="2"></th><th>공급유형</th><th>기준</th><th>3인 이하</th><th>4인</th><th>5인</th><th>6인</th><th>7인</th><th>8인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 rowspan="3">노부모 부양</td><td rowspan="2">우선공급 (90%)</td><td>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</td><td>120% 이하</td><td>8,646,374</td><td>10,293,706</td><td>10,837,258</td><td>11,679,703</td><td>12,522,149</td><td>13,364,594</td></tr><tr><td>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</td><td>130% 이하</td><td>9,366,906</td><td>11,151,514</td><td>11,740,362</td><td>12,653,012</td><td>13,565,661</td><td>14,478,311</td></tr><tr><td>추첨공급 (10%)</td><td>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</td><td>200% 이하</td><td>14,410,624</td><td>17,156,176</td><td>18,062,096</td><td>19,466,172</td><td>20,870,248</td><td>22,274,324</td></tr></tbody></table>			공급유형	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노부모 부양	우선공급 (90%)	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8,646,374	10,293,706	10,837,258	11,679,703	12,522,149	13,364,594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30% 이하	9,366,906	11,151,514	11,740,362	12,653,012	13,565,661	14,478,311	추첨공급 (10%)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200% 이하	14,410,624	17,156,176	18,062,096	19,466,172	20,870,248	22,274,324
		공급유형	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부모 부양	우선공급 (90%)	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8,646,374	10,293,706	10,837,258	11,679,703	12,522,149	13,364,5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30% 이하	9,366,906	11,151,514	11,740,362	12,653,012	13,565,661	14,478,3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추첨공급 (10%)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200% 이하	14,410,624	17,156,176	18,062,096	19,466,172	20,870,248	22,274,3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.• 2023.11.1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소형-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.(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 보유 한정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보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오류·미 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
*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